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613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 주식회사
	[redacted]
	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5. 9. 3. 선고 2015구합55950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1. 9.
판 결 선 고	2019. 1. 30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2

피고가 2014. 12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,431,513,540원(가산세 포함, 이하 같다), 지방교육세 222,661,640원, 농어촌특별세 111,330,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(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9행까지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)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).

직권으로 살피건대, 피고가 2018. 12.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2

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,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판사 송혜정